

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(안) 입안예고

-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-203호, 2009. 7. 24 -

식품의약품안전청은 농작물에 사용등록된 농약에 대하여 농산물 중 농약잔류허용기준 개정의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 일부개정고시(안)을 입안예고하였습니다.

□ 주요내용

가.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개정

- (1) 디메토모르프 (Dimethomorph)
: 포도(머루포함) 2.0 ppm
- (2) 아зок시스트로빈 (Azoxystrobin)
: 대추 2.0 ppm
- (3) 플루킨코나졸 (Fluquinconazole)
: 석류 0.5, 호박 0.5 ppm

- (1) 인삼 중 시메코나졸(수삼, 건산포함 : 0.7ppm) 및 아미설브롬(수삼, 건산포함 : 0.3ppm)에 대한 기준 신설 및 농산물 중 글루포시네이트 등 51종(내용 생략)

※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(www.kfda.go.kr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나. 인삼 및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

「위생수준 안전평가에 관한 기준」 제정고시(안) 입안예고

-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-206호, 2009. 7. 28 -

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등의 제조·가공·조리 및 유통 등의 위생관리 수준과 안전한 식품 공급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「위생수준 안전평가에 관한 기준」 제정고시(안)을 입안예고 하였습니다.

□ 주요내용

가. 목적 :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 식품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식품 등의 제조·가공·조리 및 유통 등의 위생관리 수준과 안

전한 식품공급 등에 대한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.

나. 맞춤형 위생수준 안전평가 기준 마련 추진

(1) 위생수준 안전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그 주요 평가항목을 영업장 관리, 제조시설·설비 관리, 검사관리 등 식품안전 관련 사항 등의 세부평가항목을 정함.

다. 위생수준 안전평가 실시 대상 업체 선정

- (1) 위생수준 안전평가 대상 업체
 - 어묵류, 어류·연체류·조미가공품, 피자류·만두류·면류, 빙과류, 비가열 음료, 레토르트 식품 및 배추김치를 생산하는 HACCP 적용업체
 - 연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영업자로서 과자류, 면류, 음료류 등을 생산하는 영업자
- (2) 연도별로 순차적 평가, 같은 영업자 3년 주기로 실시

라. 위생수준 안전평가자 선정

- (1)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평가자 후보군을 구성
- (2) 안전평가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

안전평가자 후보군 중 6인 이내의 안전평가자를 선정하여 이를 포함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식약청의 승인을 받도록 함.

마. 위생수준 안전평가 실시 및 등급구분

- (1) 안전평가를 위탁 받은 전문기관 및 안전평가자는 평가대상 업체의 서류, 시설·설비의 확인 및 종사자 면담 등을 통하여 평가를 실시
- (2) HACCP 적용업체의 경우 조사·평가와 연계하여 실시하도록 하고, 식약청은 그 결과에 따라 등급을 AAA등급(95점 이상 : 우수등급), AA등급(90점이상~95점미만), A 등급(85점이상~90점미만) 으로 구분

바. 우수등급으로 결정된 업체에 대하여 식약청 홈페이지 3개월 이상 게재함.

※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(www.kfda.go.kr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**「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」
일부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**

-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-208호, 2009. 7. 29 -

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대상에 식품 원료가 추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「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」 일부개정 고시(안)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.